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. 11. 28 선고 2012가단2964(본소), 2013가단3094(반소) 판결
[토지인도 등 · 지상물매수청구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7. 9. 7 선고 2017나2906(본소), 2017나2913(반소) 판결

대법원 2017. 4. 26 선고 2014다72449, 72456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4. 9. 17 선고 2013나20807(본소), 2013나20814(반소) 판결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. 11. 28 선고 2012가단2964, 2013가단3094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

변론종결 2013. 11. 7.

판결선고 2013. 11. 28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공주시 C 대 36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3, 4, 5, 6, 7, 8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117㎡ 및 D 임야 32,231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8, 1의

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6㎡ 양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테트지붕 단층 건물 123㎡, D 임야 32,231㎡ 중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36㎡ 지상 조립식 판넬 단층건물 36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 :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.

반소 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에게 67,20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공주시 C 대 367㎡(이하 '이 사건 제1 토지'라 한다) 및 D 임야 32,231㎡(이하 '이 사건 제2 토지'라 한다)를 소유한 사실,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스테트지붕 단층 건물, 조립식 판넬 단층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제1, 2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알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인 E와 이 사건 제1, 2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제1,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, 원고에게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제1, 2 토지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는 E가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것인데, 피고 주장 자체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임이 분명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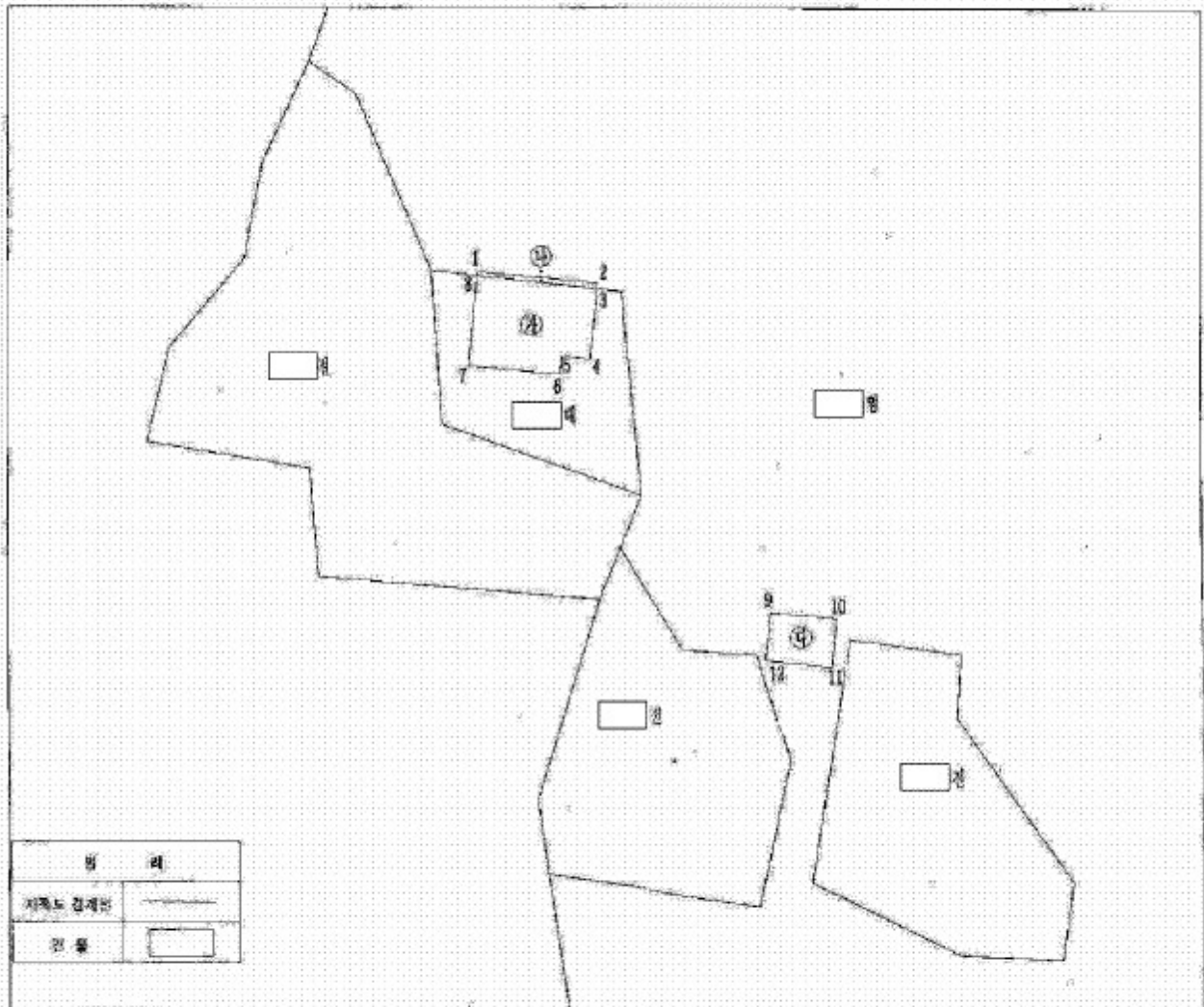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동준

감 정 도 (보완)

토지소재 : 충청남도 공주시

사건번호 : 2012가단 2964 토지인도 등



비 례	
지적도 겹개선	_____
건 물	☐

지 점	부 호	면 적(m ²)	건 물	비 고
	①	117	서명트렉클로스트리트지붕 안증	8,9-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부분
	②	6	서명트렉클로스트리트지붕 안증	1-3,8,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부분
	③	36	조립식 주택 안증	9-12,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부분

2013년 02월 06일

감 정 인 : 지적기사

☐